

第10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2月 6日(火) 11時0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1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2.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2001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6.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1年度 建設交通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8.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審査된案件

- | | |
|--|-----|
| 1. 2001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2面 |
| 2.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
| 3. 서울特別市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
|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
| 5. 2001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14面 |
| 6.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5面 |
| 7. 2001年度 建設交通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 | 29面 |
| 8.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9面 |

(11時01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갖는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새해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푸르게 가꾸어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의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국제적인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

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고견으로 2001년도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1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이 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안전심사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어제부터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종합감사 실시, 지역 민속놀이 개최에 따른 지역활동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활동 등으로 부득이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年度 財務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11時05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과 安載弘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01년 저희 재무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

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른 간부는 여러 차례 소개가 됐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30일자로 교남동장으로부터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徐明一課長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 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시간적 절약을 위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모두 재무국 소관 안전이므로 안전을 일괄 상정한 후 일괄 질의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22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오늘 상정된 안전

중에 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자면 행정자치부의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 조회기준 및 매각가격 감정대상을 조정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을 포함한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추도록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로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준 조정입니다. 그동안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시 산하 전기관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며 500만원 미만은 소요조회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품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전국에 소요조회를 하고 2,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에 소요조회 하도록 소요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불용품 처분시 매각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구연한이 초과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장부상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토록 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저희 구의 매각실적은 정기재물조사 결과 불용품 매각 대금 261만원, 청소 및 행정차량 매각이 4,024만원으로 총 4,285만원이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기관 보유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 재물조사 결과 전산장비 등 신형모델은 개발속도가 빨라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물품 일지라도 구형화로 불용품화 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런 물품에 대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간에 사용 소요조회를 통하여 서로 융통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사용 소요조회 조회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 산하기관 간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간의 물품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서울시 산하기관 간에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매각시에 감정대상 물품은 장부상 취득가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 감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품관리 규정 및 물품관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정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자치단체가 보유 사용하는 동산을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 기준은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별로 보유대상 물품 종류와 정수 책정 즉 TO를 책정, 사용기간 등을 행자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취득은

물품수급 연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서 그 다음에 정수를 책정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다음 조달청에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은 각 기간간에 구형이 되었다든지 불용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간에 사용 소요조회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국적으로 사용 소요조회를 한 다음에 관련기관이 있을 경우에 시 기관간에는 무상으로 관리환이 되고 그 외의 기관 간에는 유상으로 관리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리환이 안되고 소요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불용결정을 하고 불용결정이 되면 이것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을 하고 그 이하는 예정가를 결정해서 장부가를 기준해서 예정가를 결정해서 매각방침을 받아서 입찰에 부하고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매각방법 및 가격결정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매각은 일반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책정은 2,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액으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장부가액에 의한 예정가로 하되 1차 응찰자가 없을 때는 낙찰가격이 예정가액의 2분의 1 이하면 새로이 가격을 결정해서 재입찰을 붙입니다. 재입찰시에도 입찰이 안될 경우에는,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하고 수의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소정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조문별 내용입니다. 제15조제3항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94년 12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서 타당합니다. 그 다음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의 개정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산하기관 간의 수용조례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하던 것을 500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요 조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불용품의 활용이 기관 간에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조는 감정 기준가를 2,000만원 이상으로써 개정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수요 조회 기준을 2,000만원 인상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2000년 재무조사결과와 심사분석에서 문제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董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과 이미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 감면사항 및 상위법령의 폐지에 따른 감면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서울시로부터 이첩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5장 「보칙」, 등 총5장 23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존감면조례의 제2조제2항, 제3항, 제5조의2,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규정된 면허세 감면규정은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내2세대 이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85㎡이하

에서 60㎡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감면조례를 통해서 감면의 혜택을 받은 2000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재산세 1,100만원, 종합토지세 6,800만원, 면허세 1,1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감면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혜적 법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童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1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점과 자동차등록의 면허세 폐지를 규정한 법령 등과 같이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반됨에 따른 전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동차의 등록, 면허세 감면규정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을 종전 85㎡에서 65㎡로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는 재산세 50/100 감면과 종토세 과표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 개정으로써 당초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는 2000년 11월 21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과세면제 및 감면 등의 규정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에는 법정 비과세, 법정 과세면제, 조례에 의한 감면 등 세가지지를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비과세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기관 등의 고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 법정 과세면제 및 감면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으로 크게 봐서 그 안에는 소규모 임대주택, 국가유공자 이런 사항 등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감면,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에 의한 감면은 금번 조례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8개 분야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전체를 면제하는 것은 6개의 경우이고 재산세만 면제하는 것은 2개의 경우이고 재산세와 종토세를 5~7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2개, 그 다음 50% 경감해주는 것이 5개의 경우, 기타 과표를 경감해주는 사항 등을 해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하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상이자 및 그 유족 재산, 종교단체 운영 의료법인 재산, 전직 대통령 주택 등이고 재산세 면제 2개 분야는 사립학교 실험실습용 항공기, 선박, 철거된 무허가건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가 되었고 기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7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재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선 주택 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사항 5개 분야는 유료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아파트형 공장, 옥외광고물 정비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재개발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표를 경감해주는

사항으로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한옥, 주택사업자 미분양주택, 도시계획으로 사권제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번 조례에서 개정 또는 신설되는 규정을 조문별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2,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항은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보유차량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개정시에 면허세 폐지로 삭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외에도 제5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의 조문이 자동차 관련 규정으로써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회교육시설 등이라는 표현을 법개정으로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 용어변경은 제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내용개정입니다. 임대주택 재산세 50% 감면해주는 면적을 종전 85㎡에서 65㎡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에서 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 감면대상 면적을 60㎡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제2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50/100 경감과 종토세 과표 50/100 경감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국정감사 질문과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도에서 찬성 11, 반대 5로 해서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 적용법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7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시한을 2003

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 다음 단서규정으로써 제18조의 경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은 월드컵 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법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 임대주택 면적이 85㎡에서 60㎡로 감소 개정한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23조 소규모 주택의 범위 등은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비상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 등의 제도 허용으로 재정상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구가 바로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조정교부금의 보상적 교부율 적용이 요구되고 장기적으로는 비과세나 과세면제 등이 세법에서 축소되도록 법개정 등의 노력이 요구돼야 할 사항이며 금번 개정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감면이 실시됨으로 이로 인한 감세 규모나 대응책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童連浩 財務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또한 우리 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이 내용의 개정을 권장해온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인 “공부 등 열람의 제한” 조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에 공개제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조례

(안) 제7조제2항인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童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0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상위법의 근거없이 일반 주민에게 규제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개정토록 대통령 소속 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두가지 사항으로써 공부 등 열람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전문을 삭제하는 내용과 수수료 반환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통보일은 2000년 9월 23일자이고 규제 사무명은 조례 제4조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는 조례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었고 두번째는 조례안 제7조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

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우리 구 조례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및 그 기능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97년 8월 22일날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교수, 1급 공무원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규제의 철회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4조 열람제한 대상민원을 살펴보면 인감증명, 지방세과세증명, 무허가건물확인, 공장등록증명, 거주에관한증명 등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제4조 열람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착되지는 않습니다. 즉 독립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안별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7조제2항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정은 일방적인 관 우월적 규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관련되는 관련법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열람 제한을 규정한 개별법규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기납 수수료의 미반환규정을 금지한 법규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4호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기본정신인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의거 삭제하는

사안으로서 삭제에 따른 행정의 혼란이나 주민의 불이익 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金福同 蔣昭秀 専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 보고 및 제2항, 제3항, 제4항의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사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해서 좋았는데 사실 업무보고는 委員님들이 반드시 청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무국의 모든 국·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역할이란 것이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것이라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주요 업무계획 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 생각이 지적과하고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등기소에서도 자동 등기부등본 발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부 등기소나 다른 등기소를 가더라도 등기부등본 자동 발매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도 전산업무와 관련지어서, 지적업무와 관련지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법원과 협의해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네. 그러세요.

○地籍課長 徐燦奎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지금 송파구청하고 중구청에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자기가 이익으로 돈을 내 가지고 설치비용이 한 5~6,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자기한테

다 보내달라, 유지비도 자기네한테 보내달라, 기계도 자기네가 지정한 곳에서 사달라 하는 요구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아직 등기가 전산화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개정요구도 했고 앞으로 하반기 중에 그게 개선이 되면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 중에 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 상당히 고가로 법원 행정처에서 지정한 업소의 것만 쓰라고 해서 그런 우리 예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도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설치를 하려다가 못한 것을 사과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주민 편의도 위하고 우리 구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하시겠느냐?

○地籍課長 徐燦奎 할 예정에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종로구청 주민들은 중부등기소나 기타 등기소를 안 가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윈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네.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데 대기 시간은 없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길어야 5분입니다.

○安載弘委員 모든 민원이 굉장히 빨리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먼저 제가 기회가 있어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민원을 한번 해서 담당 직원이 답변을 했는데 기왕에 어차피 모든 행정업무가 소위 전산화되고 그 다음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 땅이 몇 년도에는 토지등급이 얼마였고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나간다는 그런 무료열람시스템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저

회 구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도 무료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시켜서 지금 3~4개년도 것을 같이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洪承台 前議長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감면조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첫째 종로 1~4가동이 그러한 지역에서 많은 재산세를 우리 구세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청진동이나 인사동, 세운상가지역 일대. 이러한 곳에 50%를 감면시켰을 때 우리의 구세에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는 12년 이상 도시계획이 미집행했을 때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서울시에서 된 걸로 아는데 종로구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인사동 YMCA 뒤에는 20~30년인가 돼요. 그걸 그냥 묶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종로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제를 시켜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둘째로 도시계획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 구역이란 것은 도심재개발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10년이 안 돼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종로1~4가 지역에 말씀하신 그 구역에 따른, 구역지정에 따른 각종 감면이 적용이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조례안에서 구세감면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 이를 테면 도로, 하천 이런 것은 이미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적용되지 않는 학교부지라든가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또 다른 부분을 추가로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도시계

획법이 개정이 되고 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서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의 도시관리국에서 이미 금년 한해를 도시계획시설로서 존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금년말까지 일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존치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이내에 관련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수에 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존치가 필요 없다고 여겨졌을 경우에는 즉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해서 자유로이 건축도 하고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계획법 규정이 개정돼서 관련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YMCA 인사동 이런 지역이 다 들어가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洪承台委員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거든.

○財務局長 董連浩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도로나 개인의 땅이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공공시설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洪承台委員 그것은 제외된다?

○財務局長 董連浩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洪承台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洪承台委員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하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례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검토보고서나 업무 계획이나 제안설명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면 안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시간 나는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읽고 보니 뭣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을 사전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議席에서 - 이번에 안건이 많아서 제가 검토보고서 만드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렇습니다. 22일날 나왔는데 추석이 겹치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인데 주요업무계획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해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당초의 목표는 1,434억 5,400만원인데 실적이 1,625억 1,1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득세가 장기 체납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은 몇년 지나면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손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손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또 다른 장치를 통해서 5년이 지나도 시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압류를 해놓는든지 방법에 의해서 시효를 계속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의 방법에 의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압류된 재산이나 이러한 저회 구에 돌아올 수 없는, 공매 의뢰를 해가지고도 저회 구에 돌아올 수 없는 그

러한 경우에는 시효결손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시효결손은 5년이 경과되면 처리한다 이거죠?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사업소세가 체납된 것을 지금 세무2과에서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 체납된 것은 실제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확인을 해가지고 통보서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진출선을 추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도 알고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마는 추적이 거의 안되는 그런 체납 납세의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당사자가 그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는 그 일은 사소한 일이지만 우편요금의 낭비도 낭비이니까 그런 일은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굳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옆에 '90년도에 사업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거주하지 않는데 우리 측 구청에서 그 분이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시세나 구세나 연체됐을 경우에는 단 2년만 연체했어도 반드시 그 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보내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입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가 비과세가 67%정도 되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이나 다 모든 국민의 완화된 저저로 인해서 자꾸 비과세 이러한 것이 늘어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비과세 지역이 소소한 우리 재정수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건수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가 비과세가 67%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건의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에서 비과세가 타 지역구 보다도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정말 비과세에 대해서 시나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吳錦南委員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으로서 저희 구가 재원확보를 하고 있는데 안고 있는 취약점 중의 하나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세금 법정주의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는 법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법을 개정하는 데는 우선에 멀리는 국회, 또 조금 가깝게는 시의회 등의 기관에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 저희가 안고 있는 취약사항을 얘기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이 후에도 그동안 노력했던 것보다도 훨씬 강도있게 훨씬 밀도있게 추진을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을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구에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67%나 되는 그러한 타구에 비해서 불균형한 비과세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또 하나만 구세감면조례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99년 8월 30일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용어 자체가요. 맞죠? 그거는. 그런데 '99년 8월 30일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는데 벌써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안하고 신년 들어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구세감면조례의 기존의 구세감면조례가 적용이 되는 시점이 2000년 12월말로 조례가 이미 시효만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면 2001년 1월이 오기 전에 이 구세감면조례가 이미 개정이 돼서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사전적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변명말씀 같습니다마는 구세감면조례는 저희 구에 적용되는 조례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전국적으로 전 시적으로 균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000년 11월 24일에 준칙안이 저희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입법예고하는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吳錦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 安載弘幹事님!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조세감면조례 9조로 인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금액은 2001년도에 부과할 금액 중에서 얼마나 되는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

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한 결과 구세감면조례 9조2항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미집행된 고시면적이 약 139,8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당 35만원을 적용했을 경우에 감면되는 종합토지세는 약 7,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7,000만원이요? 종합토지세가?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安載弘委員** 작년에 2000년도만 해도 종합토지세가 6,800만원이 감면되었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2000년도에 종합토지세 감면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9조2항이 따로 신설됨에 따라서 감면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종합토지세가 7,000만원이면 재산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아직 그것은 추정을 못해봤습니다.

○**稅務1課長 趙朝翼** 토지 이외의 건물은 정확한 파악을 못합니다. 종토세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 자료를 가지고 근사치로 해서 공시지가를 평균단가로 적용해서 약 7,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재산세는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된 토지 이외의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물건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의 재산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습시다라는 재산세는 파악을 못했고 다만 추측컨대 7,000만원 정도 종토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거의 1,000만원도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安載弘委員** 그것을 질문드린 기본 이유는 어차피 세입이 감소되면 예산을 집행하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세감면을 해줘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혜택은 어느 정도 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吳錦南委員**님께서도 질문들 드렸습시다라는 어차피 우리가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당당하게 조정교부금의 보상요율을 더 받아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정례회의 때도 거기에 대해서 건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고물관리법의 개정이라든지 면허세가 감소되는 것에 따른 감소되는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보충을 해주는 언급이 있었습시다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아직 없었습시다라는 더불어서 면허세 감소에 따른 재정확충과 같은 맥락에서 시에 건의해서 저희 재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유로 조세감면 사유로 해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종로구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감면의 폭이 전체 토지의 60%를 넘는 구란 말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 감면요율 조정교부금 요율이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 얘기를 하란 거죠. 그러면 의회에 강력하게 서울시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너희들의 이러한 사유로 해서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교부금 요율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같이 해나가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면되는 만큼 세입이 증대하거나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집행부측에서 다 못할 때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이러한 애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대단히 감사합니다.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16페이지 보면 재무과에 2001년도 세외수입 증대해서 세입 목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이자수입, 증지수입, 불용품매각대금, 위약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지수입을 보니까 2억 4,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財務局長 董連浩 맞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금년도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내가 이것을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예산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서 25쪽을 보게 되면 증지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는냐 하면 1억으로 되어 있고 기타수수료가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수료증지수입을 여기서 넣은 것 같아요.

○財務課長 趙秀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지수입이 말이죠, 전에는 모든 것을 증지로 붙여 가지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증기가 있어 가지고 넣으면 얼마짜리 찍혀 가지고 이걸로 발급이 되고 있고 증지는 그 용도가 별로 없는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수수료 낼 때 2,000원 증지를 하나 붙여 가지고 제출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전부다 인증기로 기계로써 작동해 가지고 그것으로 결산을 봐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자동으로 됩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수입이 여기 보면 3,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13억으로 되어 있던 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財務課長 趙秀完 죄송합니다.

○安載弘委員 예산서 26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13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재무과의 세외수입에 국한되는 애깁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수입은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분 3,000만원은 아마도 13억에 포함된 그런 금액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세무2과에도 과년도수입이 있더라고요. 7억 7,000만원이고 세무1과에는 과년도수입이 없더라고요.

○財務局長 董連浩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년도수입은 금년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분은 세무2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은 세무1과에서는 금년에 관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安載弘委員 아무튼 통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하시고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금년 한해도 재무국 모든 국·과장님들 그 다음에 계원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금년도 세입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董連浩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會議中止)

(14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委員長이 급한 용무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득이 간사인 安載弘委員님이 대신해서 회의 진행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長, 安載弘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安載弘 방금 金福同委員長님으로부터 소개받은 安載弘幹事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급한 일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해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1年度 都市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14時03分)

○委員長代理 安載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존경하옵는 金福同委員長님! 그리고 오늘委員長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安載弘 幹事님! 그리고 여러委員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종로구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住宅課 宣圭景課長입니다.

都市計劃課 鄭鎮皓課長입니다.

建築課 李漢求課長입니다.

公園綠地課 兪樂濬課長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정기회의 시에 상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都市管理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간략하나마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委員님들! 금년 한해 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행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실시한 재무국과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6항 도

시관리국 안전 심사 시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4時16分)

○**委員長代理 安載弘**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河徹昇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안) 중에서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4조에 건축합의기간, 그리고 제18조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 제19조제2항 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제14조 및 제19조제2항은 상위법에 근거조문이 없는 사항으로 국무조정실의 폐지 권고사항입니다. 제18조는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6조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이 165㎡에서 200㎡로 개정되어 저희 종로구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9조제1항제3호의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저희 구에서 자체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뒤에 신규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조 건축합의기간은 현행은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로 지정받은 경우는 건축합의 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한다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축합의기간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까지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됩니다. 역시 7조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18조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지금 현 조례에서 보면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에서 결정하는 가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40조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제19조 가격평가절차에서 보면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첨부서류에서 삭제토록 하고 2항 기타 가격평가 방법, 감정수수료 부담 및 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서 정하는 바도 없을 뿐더러 이 가격평가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행령 제40조하고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감정수수료 부담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 공고로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는 굳이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載弘**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시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은 국공유지 점유자가 점유권 인정면적을 확대해주는 즉, 50평에서 60평으로 확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첫째는 건축합의처리기간 설정규정 전문을 삭제하고 권리가액 평가방법규정 전문을 삭제하며 권리가액 평가시 절차규정 1~2항 중 1항만 일부 개정하고 2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가져온 주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대상사무는 제14조 건축합의기간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내용은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8조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은 삭제입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19조제1항입니다. 가격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이 중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가옥대장만 삭제해서 존치하는 일부 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 제19조제2항 가격평가시 시 절차규정 준용하는 사항은 삭제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99년 10월 5일날 개정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재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게 우선 매각한

다. 1. 점유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60평)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근거 및 권고사항의 권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97년 8월 22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이 되었고 소속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시·도·구별로 기관단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자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능은 규제정책과 규제개선에 대한 심의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2명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에는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당연직하고 대통령이 위촉한 자 중에서는 대학교수 이상, 1급 공무원 이상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처리 후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문별로 검토해 올리겠습니다. 제14조 전문 삭제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조문 내용은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이런 내용인데 이 규정은 현재와 같이 재개발후 아파트 등을 건립하지 않고 각자 환지받은 땅에 개인건물을 건립할 때 하든, 옛날에 구획정리식으로 하든 그 때에 대비한 규정으로써 상위법의 근거나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서 삭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환지처분 시 국공유지 점유자의 점유면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규정인 시 시행규칙이 '99년 10월 5일 종전 인정면적 50평을 60평으로 상향 개정한 바 있어서 타당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제18조 전문삭제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시 종전 토지와 분양 예정토지의 가액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에서 평가방법은 시·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조례에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

19조제1항제3호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위의 제18조 감정평가신청서에 첨부할 구비서류중 구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 가옥대장 첨부규정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내용입니다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곤란하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사항이 필요하다면 구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조제2항 감정절차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를 준용한다. 이 사항도 시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18조를 시조례에 규정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입니다.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입니다. 법 제34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 중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14조의 국공유지 점유면적의 인정범위 확대조치는 적법하며 우리 구 실정에서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19조제1항의 일부 개정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전문 삭제하는 수정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모

르지만 잘 안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 200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다 편성됐으니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일인지 그렇게 말씀드려도 봄, 여름 따듯할 때는 하지를 앓고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가격평가 절차에 대해서 많이 간소화가 됐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지난번 건물등기부등본까지 제출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폐지하고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으로 갈음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도시관리국장입니다. 丁炳煥委員님 질문 주신 사항과 당부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인쇄가 흐릿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니 조기에 발주해서 겨울발주가 없도록 하시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인 경우에 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나 서울시의 사정에 의해서 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 사업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설계심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고 하는데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安載弘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건대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중에 익선구역, 청진6지구 는 현재 되고 있는데 익선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2, 3년 전인가 이것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도 했고 그 당시는 13,000여 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동도 전부 합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원동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반쪽으로 잘라져 가지고 익선구역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종로구에서 올렸을 때는 3년 전인가 4년 전이었을 거예요. 과장님이 용적률 800에서 1000%, 건폐율 60%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좋다 해가지고 익선구역을 도심재개발 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80% 내지 90%가 찬성해서 올렸는데 지나다 보니까 낙원지역이 빠져나가고 현재는 서울시에다 올렸더니 서울시 자체에서도 450%, 건폐율도 거의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로서는 재개발지역이 되지 않겠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으로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 중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바로 3, 4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都市計劃課長 鄭鎮皓입니다.

○**洪承台委員** 애 많이 쓰시는 건 아는데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구로 해서 과거에 800%, 건폐율 60%로 해서 지난해 재작성이요? '99년도 12월 29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계속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서울시 관계자나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특히 당시에 의장님이셨던 洪委員님도 참석하셔서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자꾸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들이 규제가 되고 도심부관리기본계획, 도심재개발조례 개정 등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개

발 상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과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과 우리 구와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절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자 해서 9인의 합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 모임을 가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결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안을 도출시켜 가지고 주민들도 개발의 요구를 조금 낮추고 서울시도 우리 구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해서 좋은 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똑같은 안으로 재상정이 안되기 때문에 부결된 안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자문안건으로 심의를 해서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걸 재검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안이 위원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게 되면 다시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많은 개발 욕심이 있습니다라는 어차피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도심부에서 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욕심을 많이 낮추셨습니다. 좋은 안이 도출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洪承台委員**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조백년 전부터 내려온 아주 낙후된 한옥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건으로서는 주민들이 해박야 마이너스만 나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적자의 형태로 도심재개발 지역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있게 여기가 사실 종로의 중심지면서 돈화문지역에서 단성사길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문화유산이 살아 있는 거리인데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끝을 내고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 미안하지만 시간도 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했는데 우리 아까 그 지역인

데 말이죠, 권농동, 와룡동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전부다 이조시대에 짓던 한옥들이예요. 그래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냥 잘려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한옥이기 때문에 반이 잘려나가게 되면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5평, 10평을 허가를 낼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도로가 나아 되고 건물은 비어있고 그러니까 불법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 많은 아량 좀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참고로 삼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아주 죽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朴鍾植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17조3항에 보면 60평으로 연고권을 늘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고권자가 몇사람이나 늘어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국·공유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 점유자에게 연고권을 주지 않습니까? 연고권을 주는데 연고권을 165㎡까지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한사람에 그것을 좀 늘려서 200㎡까지 늘려주면 아무래도 기존의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겠죠. 평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朴鍾植委員 우리 구 입장보다는 그런 걸 해당 되는 주민에게 혜택을 더 부여하자는 거군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혹시 우리 국장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이 이런 분 있는 거 아니에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서울시의 조례규칙이 200㎡로 '99년도에 개정이 돼서 서울시의 조례규칙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제가 일기로도 河徹昇局長

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조례가 개정이 돼서

○朴鍾植委員 어째가 있는 질문입니다. 여담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낙산근린공원이요. 우리 참 이화동은 과거에 2만명이 넘는 동네가 아파트가 모두 철거되다 보니까 지금 17,000명 해화동보다도 더 작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지역의원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인데 많은 방대한 아파트를 철거했는데 그 밑에 일반주택이 상당히 들어가요. 일반주택에 해당된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집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어떻게 붙잡고 살아왔는데 나가라고 하니 그래서 동승지역에서는 주민대표들이 고건 시장을 만나서 가지고 담당국장, 심지어 신문기자까지 입회를 해서 확실하게 5년동안 유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모르느냐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있는데 금년에 123동 보상 및 철거예정이라고 했는데 동승동, 이화동 123동이 해당되는 거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도 일고의 반영이 안되고 지금 계획대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23동쪽의 동승동쪽, 이화동쪽이 포함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2001년도에 보상을 하고 꼭 철거할 예정이란 말이죠?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철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에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사유지상의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상이 좀 나가니까 괜찮은데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건축물만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워낙 보상이 낮기 때문에 건축물 보상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을 수차례 저희들한테 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시에 전달을 하고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회신이 오기는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하고 면담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상당히 여러 명이 가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 입회하에 의견이 되었는데 왜 그것이 아무 가치 없이 끝나느냐 하는 불평이 많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입자들 이주비용을 줍니까? 세 산 사람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엇그저께 전화로 문의가 왔는데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이사비용을 받느냐고 나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과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했는데 나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녹지과로 문의를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건물 중에서 무허가건물은 저희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허가건물은 전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세입자 이주비용도 결국은 주택과에서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아닙니다. 건설관리과

○**朴鍾植委員** 그러면 건설관리과 가서 문의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겠구만. 이주비 관계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건물이 유허가건물이면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면 주택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 문의가 오니까 구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시에 좀 시장실에 한번 알아봐요.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서 시장하고 동석해서 국장님, 과장님, 신문기자까지 앉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동쪽이 아닌 동송동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있는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동송동쪽이요? 알겠습

니다.

○**朴鍾植委員** 5년동안 사업을 유보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하거든. 철거해서 공원사업을 유보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고 불평하니까 알아보고 좀 저한테 알려줘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러겠습니다. 어떤 대화내용이었던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代理 安載弘** 답변 다하셨습니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질문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20쪽 지금 여기를 보니까 명륜어린이공원, 무악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예산이 명륜어린이공원 보수로 해서 1억 5,000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악, 명륜어린이공원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봤다시피 1억 6,000만원이 다 소요가 안됩니다. 시설같은 것은 그래서 그 다음 번에 당초 청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하려고 한 것이 무악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일부 돈 좀 남는 것으로 무악어린이공원을 정비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吳弼根委員** 그런데 전번에 명륜어린이 재롱잔치가 있었거든요. 작년 12월달에. 청장님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명륜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면 혜화초등학교 위에 명륜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가 시설이 불량하더라고요. 거기다 5,000만원 투자해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거든요. 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신다 해서 박수까지 받고 그랬는데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놀이터 정비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만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吳弼根委員 거기도 그렇게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명륜동에는 지금 명륜어린이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만약에 추경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최우선 도시관리국의 사업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1억 5,000이 확정되어 있다니까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 말씀대로 기존에 구정질의 하실 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남은 돈은 그렇다면 무악어린이공원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吳弼根委員 그때 이 남은 돈은 거기다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 드리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그것은 해화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하여간 무악동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약속하신 부분도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어린이공원 공사는 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공사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정시설하고 종합조경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종합조경의 자격요건을 갖고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그리고 종묘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권농동 100번지가 어딥니까? 돈화문 옆입니까? 순라길 말입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맞습니다. 순라길 그 사이에 입구에 있습니다. 점집골목 삼각주처럼

○吳弼根委員 구정질문도 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마는 좋은 사업 하게 되네요. 여기는 진작 했어야 월드컵 안에 끝낼 수 없을까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도 지금 월드컵 때문에 공원 조성사업에 너무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계획은 먼저 일부라도 정리를 해놓게 되면 시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吳弼根委員 국장님의 역량인 것 같아요. 거기

는 진짜 (○洪承台委員 議席에서 -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질문 다 하셨어요?

○吳弼根委員 아니요. (○洪承台委員 議席에서 - 같은 저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하십시오.

○洪承台委員 사실 10억 예산을 따온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신경 좀 쓰세요. 몇백 억씩 가져오는데 여기 사실 돈화문입니다. 여기 외국관광객들이 매일 버스 몇대씩 오는 자리입니다. 벌써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했습니다. 50억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가 10억을 갖고 온다는 것은 내가 창피해서 말을 안하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오죽 답답해서 지역 아닌 타 의원이 얘기 합니까? 국장님! 잘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노력하지 마시고 월드컵 전에 금년에 추경 시비 보조를 빨리 받아서 빨리 끝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거기가 돈화문길 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지역 쪽 해오지 않습니까? 거기만 되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지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좋겠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저희들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데 먼저 돈화문길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되고 우선 앞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에서도 지원을 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대학로 시범가로 정비를 하는데 1200m를 하는데 지금 역사탐방로 공사를 하고 있죠? 대명거리 역사탐방로 공사 하는 거 모르십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거기에 지금 성균관대학교까지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중단했습니다. 해빙이 되면 곧 시작할 텐데 대명거리를 대학로에서 가장 멋진 거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간판이 너무나 말도 못하게 어수선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지고 300만원씩 용자를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가지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노력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동료 위원 朴鍾植委員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권을 200㎡까지 즉 말하자면 점유권을 인정하면 만약에 불하받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점유자에게 연고권을 준다는 얘기는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건축법이 오락가락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할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거든요. 당초에 지구단위로 종 분리를 2003년 6월까지 종 분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것이 발표가 됐습

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용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2003년까지 종 분류가 그때까지 가서 1, 2, 3종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다시 분류가 되는 겁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 차등 적용하게 될 종별 구분은 2003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6월까지 구분하면 되겠고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0㎡가 넘는 지역이라든지 300세대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아마 규제가 좀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무악동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민간에 분쟁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다 통과를 시켰고 즉 말하자면 용적률도 276%로 경관심의도 다 끝났는데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는 용적률 276% 받은 것이 유효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용적률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기서 장담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항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된다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갈수록 개발법이 까다로워

지는데 서울이 발전된다는 것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발전하기가 용이해야 될텐데 갈수록 까다로워 지니 서울이 더 발전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정부하고 서울시의 시책 방향 자체가 기존에 너무 좀 도시관리를 잘못해서 난개발이 됐지 않느냐, 과거에는 타당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이농인들이 갑자기 몰려드는데 그 분들을 위한 주택이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더이상 방지하기는 어렵다 해서 과밀개발은 억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재개발이라고 하면 돈 안들이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다 이러한 인식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나 시에서는 그러면 안된다. 자기집은 자기 돈으로 짓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러한 용적률 변화라든지 에서 오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003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 부터 적용이 됩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지금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자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네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이전에 만약에 사업승인이 신청됐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안받아도 될텐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규제사항 때문에 12월 21일 이전에 신청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憲九委員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네 효자동 풍물패가 처음 결

성이 되는 바람에 거기 좀 잦다오느라고 한 30분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구정질문 때 鄭興鎮 區廳長에게 질문했던 사항 광고물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 계획에 의하면 국제적인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수준을 향상해서 시범가스로 만들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며 또 광고물관리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작년에 내가 鄭興鎮 區廳長님께 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청장님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반드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재차 질의했을 때는 당혹스러워 하시는 걸 봤습니다.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광고물이 많고 광고물이 저저분하고 또 광고물의 색상이 원색적이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웃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아닙니다만 글썽 올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물이 거의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지난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야간조명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광고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인사동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575㎡의 광고물 836개 중 589개를 존치하고 나머지 247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인사동길은 저희들이 '99년도에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그 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각 건물별로 전부 하나하나씩 시물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물레이션대로 정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용자를 해주고 이미 247개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대부분 인사동 거리를 가보시면 간판이 다른 곳보다는 훨씬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거나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고 돈화문길을 작년도에 시범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돈화문 걷고싶은 거리

설계용역이 작년에 늦어지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져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여기는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동길을 그렇게 정비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한 집의 점포 광고물이 횡, 가로, 세로해서 두개씩 입관까지 해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정비가 안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시물레이션으로 해서 어떻게 그걸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이래 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금년에 한국방문의 해요 내년엔 월드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 공원마다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만 신경을 썼지 이것은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 후진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정말로 뭔가 우리 주민들의 정신상태를 뜯어고치는 방향으로다가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렇게 않고서는 정말 혼란스러워서 못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문 열고 밖에 보더라도 아마 짐작이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해주시고 내가 약속합니다. 금년 12월 달 구정질문 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區廳長님 앞에다 놓고 정말로 호되게 비판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약속합니다. 돈화문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딴니까? 조선왕조시대에 궁궐이 있고 옆에는 종묘사직이 있고 그런데 여기도 아직도 광고물은 관두더라도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좀 고풍스러운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 경복궁 정비를 하면서 가로등을 고풍스럽게 해주는 게 좋겠다, 외국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걸 토목과에 관계되는 일이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네.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건 다음 시간에 더 물어보기로 하고 그래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름다운 종로거리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독려하든지 아니면 구예산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깨끗한 종로거리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불법광고물은 아까

내가 약속했습니다. 금년 한 해 더 봐 가지고 정말로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에 대해서 옥인동 47번지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옥인동 47번지는 작년에 제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안된다. 그리고 법상 도시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함으로 2003년도에 그 때 검토하자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재개발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서 와라. 그러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충족이 안되어 있는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李憲九委員 河徹昇局長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몇달 전에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주민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왔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아무리 크더라도 안 되는 것은 저는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되는 거는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사람들을 부추기면 나중에 다른 선택을 못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재개발은 지금 법적으로 분명하고 안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된 지역은 재개발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해달라고 하면 절차는 내가 밟아 주는데 올라갔다 또 안 되고 안되고 이

러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주민을 돕는 게 아니다.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정말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다면 시에 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안 되는 상황이니깐. 그러나 주민들이 그래도 안 돼도 좋다고 하면 그 절차는 밝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국장님은 그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풍치지구다 보니까. 그러나 작년 연말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다른 때보다는 여건이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정부에서 1조 6,000억을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33억을 받았습시다만 한 30~4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좀 하고 건설 경기를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다면 평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금년에 하면 그것도 안되겠나?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다만 법적으로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진행은 해볼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 일부 풍치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풍치경관지구 해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지금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해야지 안 되는 것을 될 것 같이 얘기해가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참 안타

깝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희값이 오르다 보니까 도시가스라도 넣게 해달라 이거예요. 재개발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그냥 현 상태에서 도시가스라도 넣고 살고싶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 세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정말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부간에 나는 李炳文 前議員이 재개발책임자라고 해서 자꾸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참으로 딱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떻게든지 되는 방향으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서울시도 이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집 고치는 건 저희 돈 갖고 해야지 옛날식으로 업자들한테 이걸 의뢰하려고 하느냐?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이걸 자꾸 실어줘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집 자기가 잘 지으려면 꼭 재개발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몇 사람이 자기들 돈 내 가지고 집 깨끗이 지으면 되잖아? 4층밖에 못 짓게 하면 4층만 지으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내가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욕 얻어먹을 것이지만 그런 얘기를 난 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거 되는 듯 얘기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호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래요. 재개발이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간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왜 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잘 짓지.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집에 상당한 값을 받고 다른 데로 이사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해 나가야지 동네에 집을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님! 그 해맞이공사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漕 금년은 아직 시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李憲九委員 예산은 나와있는데. 적어도 내년 해맞이하기 전까지는 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거죠?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저희 과는 계획은 없습니다.

○李憲九委員 문화진흥과 예산이 그리 배정이 됐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李憲九委員 그래요? 참 그거 이상한 일인데. 문화진흥과에서 무슨 토목 일을 한다고 거기서 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 무궁화 식재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公園綠地課長 俞樂濤 지금 시에서 1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재 가능 여부를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리고 심었다가 잘못되면 과장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먹어요. 거기 그 위치가. 왜냐하면 그 땅이 깊지도 얇은데 개울에 복개한 데다가 그걸 심는데 뿌리가 활착이 안되고 죽었다고 가정해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가 욕을 먹습니다. 나는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심으면 욕먹는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또 실사 심었다 하더라도 보행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무궁화나무가 진딧물이 많아서 우리 국화꽃이지만 혐오식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전에 쥐똥나무를 심었었는데 그게 살기는 잘 하는데 보행공간이 적다 보니까 훼손이 심하고 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거를 철거한 전례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국은 어떻게 보면 종로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河徹昇 局長을 비롯해서 課長들께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종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에 제가 본회의장 질문에서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중에서 장기간 소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소규모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방안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장께서 답변을 긍정적인 검토가 있겠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신발생 무허가가 아닌 기존에 발생했던 무허가건물 중에서 철거되지 않은 소규모의, 일정 규모 미만의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차체에 양성화해서 소위 주민들로 하여금 건축법 위반이라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委員長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당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무허가건물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건축법 위반자로 남아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무허가건물 일정 기간이 신발생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를 저희 구청 차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 없고 일단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99년도에 법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례조치법이 생겼는데 그때에도, 옛날에 한번 무허가를 양성화한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 향후 건축법은 의미가 없다. 때가 되면 무허가를 풀어주고 또 때가 되면 풀어주고 하면 누가 무허가를 안 짓겠느냐? 그러면 건축법이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로

다. 도저히 이러면 법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러한 판단에서 건교부에서 그것까지는 수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다만 건축허가나 신고를 정식으로 득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생겨 가지고 준공을 못 받은 위법건물, 그 중에서도 80㎡가 안 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이어야 되고. 그 건물의 용도 절반이상이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0건 양성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건교부에 의견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법개정이 생겼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건축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건교부에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 무허가에 대해서, 생계형의 소규모 무허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아주 영세한 생활 무허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형 무허가건물과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蔣秀秀 專門委員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19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격평가 절차, 가격평가 방법을 서울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조 전체를 삭제해도 무방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가격평가 방법이고 다만 여기서는 가격평가 절차 중에서도 신청서류만 여기에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 사이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평가 신청서를 내면서 여기에 어떤 서류가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거든요.

○委員長代理 安載弘 河局長님! 그건 내가 질문한 요지가 아니고 그런 말씀은 토론할 때 해도 되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금년에 자연경관지구 내 일부 해제지역과 건축

규제 완화지역을 공람·공고를 하셔 가지고 12일까지 공람·공고 중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다 도시관리국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간 풍치지구가 지정된 데 이어서 적어도 30년 동안 단 한번도 그렇게 대규모로 도시계획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거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재무건설위원회인 만큼 우리 도시관리국의 局長님, 課長님, 특히 鄭鎭皓 課長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도시계획의 모든 문제, 발전의 문제가 있다면 구에서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면 정말 주민들로서는 여러분들을 더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鎭皓 課長님! 한 말씀 주시지요?

○都市計劃課長 鄭鎭皓 委員長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접근이 제가 오기 전 '9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거나 재개발지구가 지정됐을 때 한해서 해제하는 것이 여태껏 행정이었습니다. 작년 7월 15일 서울시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安委員長께서는 200㎡까지 소필지 면적에 대해서 규제완화 이걸 보셨지만 저희들은 그 조례내용을 보면서 대형필지로 가서는 실익이 없겠다 그래서 소필지, 블록 별로 전체를 망라해서 조사를 한 두 달 동안,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형을 보고 와서 저희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특정 지역 주변에 소외된 지역 팔판동, 삼청동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나머지 청운동이나 해동화지역을 돌아보니까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조망축 차단, 뒷집이 앞집을 내다보면서 한 층이 올라가도 관계없다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규제완화 쪽으로,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완화해서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에 이익을 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네 군데가 해체고 열두 군데가 규제완화입니다. 그래서 열여섯 군데를 작성

했습니다. 가는 길은 상당히 험합니다. 서울시가 이 안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항을 일일이 돌아보니까 해화동 같은 경우는 성북동과 우리 해화동의 사이는 너무나 빈부의 차가 큰 것처럼 그렇게 지역적으로 똑같은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점도 발견했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이제 공람·공고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선에서 다시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올린 대로 원안대로 다 해제나 규제완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위원님들께 공람·공고를 돌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가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많은 추가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서울시와 어떤 교감이라도 형성해볼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열고 구의회 3월초에 다시 의회가 열리면 서울시에 올려서 의원님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서울시에 우리가 올린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특별히 조례(안)밖에 없고 기왕에 위과장님들이 다 출석하셨고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므로 2001년도 각과의 과장님으로서 사업 각오를 한번씩 들어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宣圭景課長님부터 2001년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던가 의원님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宣圭景** 住宅課長 宣圭景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택과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은 주요업무 계획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택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청운아파트와 삼일아파트 정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화와 조속한 추진 그 다음 아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예방

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園綠地課長 俞樂濟** 公園綠地課長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3개 팀으로써 공원분야, 녹지분야, 조경분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 가용인부를 최대한 동원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지는 30%,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리가 되는데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산불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만 해동이 되면 또 산불의 위험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인원은 2월 2일부터 산불방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경분야로써는 금년에는 가로정비를 하는데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사업과 구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되는데 시사업은 주로 낙산하고 탑골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하고 저희한테 배정된 시비나 구비는 식재분야는 될 수 있으면 조기발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일부는 시설공사가 착공이 되더라도 연말까지 가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와 협의해서 금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建築課長 李漢求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局長님도 한 말씀하시지요.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4개 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 위원회 때마다 고견을 참고삼아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각 지역의 민원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15時30分 會議中止)

(15時41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 會議中止)

(15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1年度 建設交通局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委員長代理 安載弘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녕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起用 建設管理課長입니다.

다음은 李宗哲 土木課長입니다.

다음은 李相道 交通行政課長입니다.

다음은 李基朝 交通指導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金福同 委員長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설과 함께 찾아온 신사년 한해동안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

통하시기를 우선 기원드립니다. 특히 20년만에 내린 폭설에 휴일 및 사업도 제쳐두시고 지역의 제설작업에 솔선수범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지난 연말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은 보고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지역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 조기 발주해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의원들께서 지도편달하여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에 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추진사항은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금년 한해도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에 선봉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建設交通局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 안전심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5時52分)

○委員長代理 安載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建設交通局長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중요한 국가부존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공공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1993년 12월 10일에서야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가 제정되었고 19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부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었기에 관련법 및 서울특별시조례준칙안에 따라 우리 구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규정을 두어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시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제5조에서는 지하수 고갈, 지반침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지하수의 대량, 장기간 개발, 이용자에게는 허가기간을 제한하며 (안)제6조, 제7조에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공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합니다. (안)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하수영향 조사서의 심사 등 중요사항 결정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사항을 정하고 (안)제12조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종료 후 지하수 관정을 원상 복구하도록 원상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원상 복구방법을 정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안)제13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수위 및 수질을 자동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이고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보전관리 하고자 합니다. (안)제14조에서 지

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조례준칙(안)에 의거 각 자치구가 동일하게 제정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및 지도편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載弘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2001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이 '99년 3월 31일자로 보완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6일자로 공포됨으로써 동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위임 사항과 기간위임 사항을 같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전에 지하수법의 요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며 대상은 전국토의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뒀습니다. 보전구역의 필요성은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있거나 지반침하, 하류수량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전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는 폐수방류 방지나 폐기물 투기 등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우물 약수터를 제외한 동력장치를 이용한 양수시설이 되겠습니다. 허가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예치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 전에는 지하수영향평가를 반드시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 후에는 지하수개발등록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때 허가조건으로 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사항은 지하수영향평가기관의 등록취소 및 감독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수영향평가기관은 허가시에 반드시 이 평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시공업체의 등록요건이나 시공관리요령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허가사항을 반드시 이 업체가 전횡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등록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지하수법 규정입니다. 허가시 지하수영향평가실시를 의무화한 규정과 또 시공은 등록업체에만 하도록 한 법 규정입니다. 지하수영향평가 의무화를 한 것은 지하수법 17조이고 시공을 등록업체에 하도록 한 사항은 지하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의시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이것은 구에 두게 되는 위원회입니다라는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규정은 반드시 귀속사항으로 하지 않고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항을 우선 조례심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3항 거기에는 재량사항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법규는 지하수법 제40조에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과태료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하나의 구색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절차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조문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로써 일반적인 사항이 되었고 제3조 지하수의 조사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5조에서는 지하수 조사를 건설부장관은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고 구청장은 재량사항으로 해서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허가신청시에 제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를 종로구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9조에서는 심사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하수개발허가시에 지하수 고갈,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지장 등을 고려해서 개발이용 기간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6, 7조는 지하수보전구역이 시장으로부터 통보되었을 경우에 열람 내용이나 열람 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수질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구청장에게 통보케 되어 있으며 부적합 시설은 정수처리 지시를 하거나 시설보완 및 필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제10조, 11조는 구청에 설치할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써 위원장은 건설국장이고 위원은 구 관계관 전문가 외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는 의원님 숫자는 조례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심의사항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과 지금 조례사항

으로는 행위허가시에 반드시 여기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제12조는 원상복구 방법이나 시기, 감독공무원 감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지하수관측정 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과태료징수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하수시행령 제40조와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당해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사항이고 기타사항은 상위법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사항으로 타당합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허가신청시에 첨부되는 지하수영양조사서의 심사서를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들도록 한 규정은 영9조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귀속규정한 것으로서 규제개혁 완화 정책에 반하는 사항으로 재량규정으로 완화하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바로 안 되시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우선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吳局長께서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그 안에. 거기에 상정을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죠? 거의 그렇죠? 그렇다면 이 조례와 관련지어서 위원회 내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거나 또는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특별사항이 있으면 나오는데 이 준칙안이 서울시부터 내려와 가지고 25개구청이 동일하게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사실 조례라는 것이 의회로 넘어올 때는 사실 집행부 내의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관립법이나 영이나 또는 관련된 규칙이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도시관리국 조례를 보면서도 그 영에서 위임한 내용과 실제로 자치구 조례로 만든 내용이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영에서 위임된 내용이나 법에서 위임된 내용 그러한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인데 도시관리국에서 그 내용을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종로구 지하수조례도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토의를 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한 과정이 대개 생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리이러한 소관부서에서 이리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무사히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모법이라든가 상위법의 상위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내용에 대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가 '99년도 11월 15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죠? 그러면 각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텐데 '99년 사건을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왜 2001년에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丁炳煥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조례는 '99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으면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저희들이 조례 상정이 솔직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

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수관련 조례는 지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즉각 즉각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태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타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조례 상정이 늦었습니다라는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된 업무는 전국적으로 종로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10조 위원회 구성은 6인 이상 10인 이내로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위원수 참여는 조례에서 임의로 결정이 가능합니까? 인원이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꼭 못이 막아져있습니까? 조례로써 즉 말하자면 위원 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10조에는 6인 이상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조례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 수는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말씀은 전문위원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는 6인 이상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융통성있게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6 내지 10인은 서울시 조례안 기 25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6명과 10명의 그 제한은 그대로 조례상으로 놔두고 규칙에서 인원은 융통성있게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0조3항3호 임기가 다른 것은 보통 2년인데 이것은 굳이 4년인데 또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다른 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이것은 4년으로 장기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만들어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특별한 기간의 뒷받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준칙안에 각 25개 구청이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고 기간의 위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조정도 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써 정말 기간을 2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10조3항에 보면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인데 구의원은 몇명이라고 못박아져 있고 의장이 추천하면 다수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6인 이상 10명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 구성을 보면 2명 내지 3명이 적정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은 듭니다.

○**丁炳煥委員** 의장이 추천하는 그것도 꼭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많은 과장님이 애를 쓰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4페이지 2001년도 주요건설사업 현황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맨 밑에 18번 돈화문길 견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수송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완전히 끝난 다음에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위임을 맡았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맞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런데 이것이 구비로 29억 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됐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잘못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

○**洪承台委員**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洪承台委員** 36억이 내려왔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맞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래서 그것을 하나 물어봤는데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거리는 잘 알다시피 돈화문길부터 사실은 필동까지 중구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관계 때문에 중구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맞습니다.

○**洪承台委員** 그래서 종로구만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찾아가서 종로는 돈화문 거리는 정말 살아움직이는 600년 정도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만큼은 예산을 빼면 안된다. 국회에서 암만 뭐래도 안된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우리 종로에 예산 36억을 아마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마 국회에 감사에 가서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이 예산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지적을 당해서 중구권은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화문길 거리는 참으로 우리 종로뿐 아니라 서울시 국가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입니다. 아까 李憲九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라는 세계 유네스코에도 기록된 종묘단지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계속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금년에 완공됩니다.

○**洪承台委員** 그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에 도로조명 분야 이것이 4억 2,000이 되어 있죠? 돈화문길 걷고 싶은 거리 그것은 어떤 조명을 어떤 모양으로 하려고 설계도면이 나와 있은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洪承台 前 議長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돈화문길은 토목공사는 29억으로 되어 있고 조명은 기본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조명기구라든지 가로등주의 형태라든지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해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린 내용이고 전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가로등주의 형태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설계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직 모르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다 나와 있습니다.

○**洪承台委員** 답변을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承台委員** 그것은 좀 특이한 모양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고가 잘 안됐기 때문에 알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거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리라는 것을 아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14페이지 13번 종묘와 인의동 49-3 도로개설공사 있어요? 6억이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洪承台委員** 이것이 작년 추경예산안에 집어넣은 거 아시죠? 3억을 다시 추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3년인가 4년인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데 신설을 하면서 계속사업으로 3억을 갖다가 해놓고 3억을 왜 빼느냐 하고 추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洪承台委員** 어떻게 금년까지 안된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그때 장담을 하면서 3, 4년을 끌고 온 것을 또 2002년 사업추진에 넣은 이유가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무슨 말씀이나 하면 이것이 '98년부터 사업추진했던 거예요. 3억을 예산을 가져왔고 다른 지역은 본 사업이면서 5, 6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억을 집어넣어 가지고 질책을 더 했죠. 그래서 3억을 집어넣어서 6억으로 완료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금년 2001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3억을 책정했던 건데 다시 이거를 언제까지 2002년까지 갈 거냐 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유용을 해서 6억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보상하고 작년에 공사가 늦게 착공해서 이월했던 겁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이월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작년 이

월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넘어오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洪承台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다른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미뤄왔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이것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금년도 공용주차장 관계인데 부지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예산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네. 그렇습니다.

○**洪承台委員** 앞으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네. 알겠습니다.

○**洪承台委員**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것은 걷고싶은 거리 그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土木課長 李宗哲** 착공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洪承台委員** 어디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 모두에게 공평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洪承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憲九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효자동 68번지 공용주차장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요즘 입찰받은 사람의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그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현장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지금 공개입찰이 돼 가지고 최고한도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그 양반이 수지가 안 맞아서 혹시나 나 이거 못 하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交通行政課長 李相道** 아직은 없습니다.

○**李憲九委員** 지금 거기 들여다보면 차가 10대도 안서 있어요. 그 양반이 한 달에 주차료를 대당 18만원 받고 있는데 비싸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애초에 바라던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해서 구예산으로 22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꼭 이혜타산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유찰이 되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면하고 우리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랬었는데 화곡동에 있는 어느 분이 그걸 응찰해 가지고 그 사람도 곤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 그 다음 신교동 66번지 그건 지금 상태가 계약을, 어디에 계약을 했나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명의이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건 해빙되는 대로 철거작업을 하고 바로 주차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거기 삼양회장 그 저택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그것도 철거할 겁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부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상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철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李憲九委員** 아까운 건물인데 그것이 꼭 그렇다면 교통지도과 지난번에 종로3가 그 좁은 건물로 다 이전했었는데 그런 건물을 교통지도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도 되겠고 기타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 게 그거 참 아깝단 말입니다. 그 건물도 보상해 줘놓고 그 건물을 헐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이걸 어디까지나 설인데 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 또는 도로가 개설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자투리땅을

보상받은 사람이 너무 자투리땅이 적어서 그걸 우리 구청에다 몽땅 파는 수가 있죠?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네.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래서 구청에서 평당 100만원 주고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그 자투리땅을 바로 그 뒷집에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팔아야겠지요. 그럴 때 동일한 가격으로 팝니까? 아니면 가격이 다릅니까? 그거 하나하고 둘째는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그것을 돈을 치뤄주고 두 손 돈으로 치뤄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권리이전을 안 하고 있다가 옆에 필요한 사람에게 되넘기는 그런 게 있는가 하는 이 두가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동 68번지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는 지난 신년인사회 때도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1년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손해가 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말씀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1년 안에 안 들어오고 계약이 되는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상담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면 그게 4,100만원에 낙찰이 된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 4,100만원을 일시불로 구청에다 지불하는 거죠?

○交通指導課長 朴起用 분납하는 겁니다.

○李憲九委員 네번으로?

○交通指導課長 朴起用 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두번째 도로개설을 하면서 누상동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개설지역은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주고 주거환경개선지역의 도로개설 자투리땅은 주택과에서 확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되 저희들이 보상

이 끝나면서 등기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다시 팔 때에는 관리권이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일반 잡종지로 재무과에서 별도의 저희들이 보상한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고 별도의 감정으로 해서 매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우리 누상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집들을 짓다 보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분쟁이 많은 과정에서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하기가 겁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말이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착오가 있겠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을 그것을 보상해주고 종로구로 이관해서 나중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팔 때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감정가에 의해서 판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있을 수도 있고 감정가니까 거의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마치 도둑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朴鍾植委員 議席에서 - 한 땅을 가지고 1년 안에 감정을 다시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감정가격을 산정할 때 1년 내에는 재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李憲九委員 1년 안에 살 때는 보상을 우리가 100만원에 해줬으면 팔 때도 100만원에 사야한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지요.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 입장에서 그 필지에 대해서 오늘 감정을 했으면 1년 안에 재평가하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이걸 보상을 해줘서 이 사람이 사가고 이 자투리땅을 그 뒷집에서 필요해서 산다고 하는데 1년 안에 평가를 안 하면 그 100만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평가가격이 보상을 줄 때하고도 가격이 1년 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럼 구청에서 장사해먹는다는 말이 맞네요?

○土木課長 李宗哲 이것이 도로 나기 전에 하고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서고는 평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李憲九委員 그럼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네. 우리가 얘기 들어보니까 100만원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바로 샀으면 100만원이라도 되팔 수가 있는데 A란 사람한테 보상을 해줬는데 바로 그 뒷집 B란 사람이 바로 산다고 그럴 때는 100만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러니까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때에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의 매입가하고 다시 사시는 분이 시기를 바로 해서 사시면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면 큰 변화가 없는데 도로개설을 완료한 시점에 감정이 들어가면 주변 여건이 변화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

○李憲九委員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는 나도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도로가 지금 헐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주민들이 질의해 왔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겠다고 목목과장님한테는 우선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월 초하룻날 껌껌한 해맞이 행사하는데 전기를 가설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안등에다 연결돼서 그런지 해맞이하기 바로 그 직전에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기왕 정식으로 해주실 때는 그걸 감안해서 가로등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 동네 도로포장 아시죠?

○土木課長 李宗哲 네.

○李憲九委員 지금 우리 동사무소 앞에 옥인아파트 올라가는데 지난번 계획대로 이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弼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弼根委員 吳弼根委員입니다. 올해 아스콘 포장으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8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저는 이번에 청장님과 신년인사회 날 우리 관내 골목길을 전부 포장을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전부 해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작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당초 6억이었는데 2억을 추가 배정해서 8억으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올려주시는 각 동의 뒷골목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포장하는 데도 원청자하고 하청자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원칙적으로는 이 도급자가 단종에 한해서 하도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도급 분야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하도급이 안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소정의 절차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저희 관내에 많은 포장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포장을 해놓고도 지금 육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 아스콘 포장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떠버렸어요.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좀 업자 선정을 잘해서 포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느 온도를 유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시행한 일부 공사라든지 이러한 기온의 차이로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한 시공업자가 정확한 시공을 잘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전반적으로 공사 완료지역을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재조사를 해서 재시공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어쨌든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더라고요.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할 수 있게 그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콘 포장과 관련한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희들이 작년부터 입찰제도가 적격심사제도로 바뀌어 가지고 각 발주 부서에서 서류 발주가 되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들어갑니다. 그 공개입찰에 의해서 적격심사제도로 낙찰이 되는데 그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평가를 점수로 해서 평가된 점수에 우선 업체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朴起用 建設管理課長님!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거리가 깨끗해질 거 같은 기분인데 혹시 19개 동 전체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와 가지고는 못 돌아봤습니다.

○吳弼根委員 지금 우리 혜화동은 중산층이 살던 아주 깨끗한 동네였는데 지금 동네를 가보면 정말로 제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가게 앞에 안의 물건보다도 더 많이 도로에다 쌓아 놔 가지고 한 사람이 내놓다 보니까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놓았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골목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다니지 않고 도로에다 받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당장 내일이라도 혜화동에 가서 가지고 노상의 적치물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다니는 혜화동 로터리에 장작을 떼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웃을 일입니다. 그분도 먹고살려고 그런 장사를 하겠습니까만 장소를 좀 옮겨서 혜화동 로터리는 혜화동 관문입니다.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알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과일장사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혜화동 로터리가 완전히 필리핀 사람들은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좌판 피고 장사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개판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課長 朴起用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吳弼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丁炳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우리 交通指導課長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지역 간, 이웃 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이면도로 주차문제 단속은 불법주차 단속 딱지를 붙이죠? 그런 거를 어떤 차량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딱지를 붙입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무악동 같은데는 단속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동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丁炳煥委員 단속원이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한다 그 말씀인데 구청에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주간에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주로 근무시간이죠.

○丁炳煥委員 야간은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야간단속은 학교 주변이나 단순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야간단속에 대한 당직실이

나 상황실을 배치해놓고 있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네.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연락을 해도 무응답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다 차를 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도 진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진입을 못 하게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언덕밭이 올라가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면 승용차도 거기 뚫고 들어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 야간에 단속의 손길이 부족하다면 각 동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통·반장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주차를 못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交通指導課長 李基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니까 야간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승용차든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은 원래 질문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드리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서 책자에 보면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건설사업 부실 및 부조리 근절대책”이라고 있는데 전 부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을 게을리 하신다면 실제로 8억 아니라 18억을 예산배정을 한다 해도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혜화동 및 弼根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스콘포장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OT를 깔게 되어 있으면 OT를 깔아야 하고 포장을 하기 전에 유화액을 충분히 깔아줘서 접착이 잘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아스콘포장을 할 때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감독관으로 나와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고 그 두께가 기존에 있는 두께 위에 깔릴 때 OT 이상이 깔렸나 감독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떤 감독관도 나와있지 않고 다만 공사가 완료된 시점 이후에 현장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 1년 내내 토목과에서 열심히 도로관리를 위해서 애쓰셨는데 실제로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애쓴 보람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공사감독을 할 것인지, 그러한 부실을 어떻게 추방할 것인지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깨닫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구청이 현재 체제로는 저희들이 내업과 외업이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조금 외업이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비사업은 감독 대행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나 행정적인 이런 것만 주로 하고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구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체를 구조제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비사업도 위임하는 걸로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시비사업을 위임해서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저희들이 줄고 그러다 보면 구비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니까 작년도보다 더 좋은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사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비사업에 대해서 감리계획을 금년초에 계속해서 중앙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건설교통국에서 소위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해서 위촉장 주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공사하는 내용을 의원들이나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명예

감독관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실제로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독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발주가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의원님들한테 행정전화를 통해서 주시든 또는 지도를 팩스로 넣어주신다면 “의원님! 이렇게 오늘 공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의원님께서 감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의원님들도 토목과 李宗哲課長이 정말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이것도 인정을 해주실 것이고 기왕이면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그러한 재원들이 부실을 방지하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독도 강화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건 무슨 공사든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도로포장, 아스콘포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닐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土木課長 李宗哲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줘서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정해준 목적이 부조리 근절대책이고 두번째가 공사품질 향상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토를 두고 시설관리공단은 확대 편성한 겁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마지막으로 금년도 토목과에 건설사업부실 및 근절대책을 보니까 중간검사제를 실시하고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그 다음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한다면 그렇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아무튼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의 吳鍾錫局長을 비롯해서 각 課長님들 그리고 여기 안 계신 팀원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은 종로의 각종 중요한 도로와 하수도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사업비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모든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李宗哲課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안 4조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에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의견취를 반드시 듣도록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安載弘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필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4조에 보면 종로구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에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시나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그 경우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그렇게 되면 앞하고 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견을 듣도록,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귀속행위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안이고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재량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委員長代理 安載弘 앞부분은 귀속이고 뒷부분

은 새량이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죠. 방법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큰 문제 없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委員長代理 安載弘 그 다음에 위원의 수가 나와 있는데 위원의 수에서 6인에서 10인 이내로 하시고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들어가시고 종로구의 관계공무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이나 대학교수나 전문가는 비중을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시는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 만약 8명이나 9명으로 한다면 과반수 이상으로 이렇게 편성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규칙에다 정할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6인에서 10인 이내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6인에서 10인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시행하면 되니까 6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으로 할 것인지 9명으로 할 것인지

○委員長代理 安載弘 구의원님들이 가장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민감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吳局長께서 위원님들을 몇분 했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2명 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委員長代理 安載弘 구의원님을 2명 정도로 하고 나머지 과반수에서 조정하시겠다고 그러한 말씀이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게 조정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어떻게 부과가 되죠? 과태료 징수 예가.

지방자치징수조례 예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일부 지방자치 징수조례하고 비슷하게 과태료 금액이나 징수의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과태료 부과절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지금 과태료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洪承台委員님!

○洪承台委員 죄송합니다. 한가지를 꼭 질의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도시정비국에 속하는 건지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돈화문 견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36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사동도 과거에 문화탐방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을 때 화장실이 없어 가고 굉장히 외국인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냈어요. 또 컴퓨터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을 좀 서울시에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현재 돈화문길 설계상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일단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일단 조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洪承台委員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委員長代理 安載弘 吳鍾錫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

로구지하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심사보고를 작성토록 하고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 福 同 安 載 弘 吳 弼 根 洪 承 台
李 憲 九 吳 錦 南 丁 炳 煥 朴 鍾 植
李 炯 述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 務 局 長 董連浩
都 市 管 理 局 長 河徹昇
建 設 交 通 局 長 吳鍾錫
財 務 課 長 趙秀完
稅 務 1 課 長 趙朝翼
稅 務 2 課 長 徐明一
地 籍 課 長 徐燦奎
住 宅 課 長 宣圭景
都 市 計 劃 課 長 鄭鎮皓
建 築 課 長 李漢九
公 園 綠 地 課 長 俞樂濬
建 設 管 理 課 長 朴起用
土 木 課 長 李宗哲
交 通 行 政 課 長 李相道
交 通 指 導 課 長 李起朝